



2023년 (국고)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 공모 FAQ

2023. 2.6.(월) / 2023. 2.15.(수) 추가 / 2023. 2.16.(목) 일부 정정

* 사업설명회(2.13) 이후 추가 내용 '노란색 표 내' 추가 작성

* 2.16.(목) 기존 안내된 '공고문'대로 p2 빨간색 글씨 내용 정정

구분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p1-5 - 사업내용 p5-7 - 사업예산 p7-9 - 지원신청서(별도 양식, 필수서류) p9-11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p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창작(진입) 061-900-2231, 2283 / artchangeup@arko.or.kr - 콘텐츠 창작(성장) 061-900-2289, 2237 / artchangeup@arko.or.kr -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 061-900-2237, 2283 / artchangeup@arko.or.kr <p>* 지원신청 시,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 /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8:00) 이용바랍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신청 자격	공통	<p>[신청자격] Q. 개인/단체구분별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A.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th> <th colspan="4">지원신청 가능 여부 (NCAS 신청대상)</th> </tr> <tr> <th>콘텐츠 창작(진입)</th> <th>콘텐츠 창작(성장)</th> <th>확산 서비스(매개)</th> <th>확산 서비스(수익)</th> </tr> </thead> <tbody> <tr> <td>개인</td> <td>개인(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td> <td>○</td> <td>○</td> <td>○</td> <td>X</td> </tr> <tr> <td rowspan="3">단체</td> <td>민간 단체·기관·기업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td> <td rowspan="2">X</td> <td rowspan="2">X</td> <td rowspan="2">X</td> <td rowspan="2">X</td> </tr> <tr> <td>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재단) 및 단체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td> </tr> </tbody> </table>	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	지원신청 가능 여부 (NCAS 신청대상)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확산 서비스(수익)	개인	개인(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	○	○	○	X	단체	민간 단체·기관·기업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X	X	X	X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재단) 및 단체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		지원신청 가능 여부 (NCAS 신청대상)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확산 서비스(수익)																									
개인	개인(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	○	○	○	X																								
단체	민간 단체·기관·기업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X	X	X	X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재단) 및 단체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추가	<p>[신청자격] Q. 신청 이전, 수행실적이 있어야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p>A. 기존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수행 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각 공모유형 목적에 맞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산 서비스' 유형의 경우, 확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채널을 기반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의 확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고일 이전, 플랫폼·채널이 오픈되어 있어야 하며, 확산활동 실적을 지원신청 서상 작성해주셔야 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495 411 2101 85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지원신청 가능 여부</th> </tr> <tr> <th>콘텐츠 창작(진입)</th> <th>콘텐츠 창작(성장)</th> <th>확산 서비스(매개)</th> <th>확산 서비스(수익)</th> </tr> </thead> <tbody> <tr> <td>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td> <td>○</td> <td>○</td> <td colspan="2">위 답변 내용 참조</td> </tr> <tr> <td>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2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 공모유형에도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함(예 : '22년 진입 선정 → '23년 진입 신청) 단, 새로운 계획의 프로젝트(이전 작업 후속 발전하여 새로운 시리즈 기획 등)일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p> <p>[신청자격] * 기존 공고문에 안내된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대로 2.16.(목) 빨간색 글씨에 해당되는 내용 정정</p> <p>Q.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예술인활동증명'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p> <p>A.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국내외 거주여부, 계약(참여)기간 및 대가금액, 지급 방식 등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오니 가입대상 여부 및 예상 보험료 등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495 1098 2101 1457">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신청/참여 인력 구분</th> <th colspan="2">지원신청 가능 여부</th> </tr> <tr> <th>예술인활동증명 소지</th> <th>예술인고용보험 가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td> <td>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td> <td>○</td> <td rowspan="3">별도 확인 필요</td> </tr> <tr> <td>대한민국 국적</td> <td>X</td> </tr> <tr> <td>단순 참여인력</td> <td>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해외 예술인 포함)</td> <td>예술인 활동증명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신청 가능 여부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확산 서비스(수익)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	○	위 답변 내용 참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	○	○	○	'20~'22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	○	○	신청/참여 인력 구분		지원신청 가능 여부		예술인활동증명 소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별도 확인 필요	대한민국 국적	X	단순 참여인력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해외 예술인 포함)	예술인 활동증명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구분	지원신청 가능 여부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확산 서비스(수익)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	○	위 답변 내용 참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	○	○	○																																					
'20~'22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	○	○																																					
신청/참여 인력 구분		지원신청 가능 여부																																							
		예술인활동증명 소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별도 확인 필요																																						
	대한민국 국적	X																																							
단순 참여인력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해외 예술인 포함)	예술인 활동증명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추가/일부 정정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2	<p>[해외 예술인의 지원신청 혹은 사업참여 자격]</p> <p>Q. 해외 거주 중인 예술인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따라 아래 조건 충족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u> : ①국내 거주 향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②결과발표 시점(4월 3주 예정)까지 실물 OTP 발급가능으로 선정 직후 교부신청이 가능한 자(2가지 모두 충족) 2) <u>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u>, 위 2가지 조건 외에 ③신청접수마감일(2.22.수 18:00) 기준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이 확인된 자(3가지 모두 충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창구를 통한 발급가능 여부 및 일정 확인 필요 3) <u>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아닌 공동참여자·단체·기업 및 그 외 단순 참여 인력인 경우</u>, 해외 예술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활동 증명' 불필요)
	3	<p>[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동일인·단체 기준 여러 사업 신청 관련]</p> <p>Q. '개인'과 '단체(개인명과 단체 대표자명이 동일)'로 각각 다른 유형에 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불가합니다.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여러 개 사업유형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혜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유형 중, 택1하여 지원 가능)</p> <p>* 신청 불가/가능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AS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공동 대표자가 '단체'로 1개 사업을 신청하고, 또 다른 사업유형에 '개인'으로 신청 ⇒ 신청 불가, 2개 사업 모두 행정 결격 · NCAS 신청주체의 대표자가 '단체'로 1개 사업을 신청하고, 대표자가 동일하나 다른 명의의 '단체'로 또 다른 사업유형에 신청 ⇒ 신청 불가, 2개 사업 모두 행정 결격 · NCAS 신청주체가 아닌, 실연 등 단순 참여인력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사업유형(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과 관계없이 여러 사업에 참여 ⇒ 신청 가능
	4	<p>[3개 지원사업 간 중복 지원 관련]</p> <p>Q. 동일인·단체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에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p> <p>A. 다른 내용의 프로젝트일 경우, 동일인·단체라 하더라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에 각각에 선정되신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내용의 프로젝트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p> <p>다만, 지원심의 기준 '수행역량(30%)'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원활히 수행하는 것(사업기간 및 규모 등 고려)이 가능할지 지원신청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5	<p>[중복 신청 관련]</p> <p>Q.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혹은 타 기관의 공모사업에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작품을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하여 재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온라인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내용과 차별화된 사업목적 및 수행내용, 온라인 창작계획을 가진 경우(다른 내용의 프로젝트일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작품을 온라인 환경에서 단순 재실현하거나 중계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는 지원 불가합니다.</p> <p>아울러, 수혜 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 연계 타 사업 지원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선정 이후, 관련기관 간 통합 점검 예정</p>
콘텐츠 창작	6	<p>[콘텐츠 창작(진입, 성장)]</p> <p>Q.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유형의 경우에도 신청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플랫폼·채널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요?</p> <p>A.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채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p>단, 사업수행 완료 이전에 예술인·단체 보유의 온라인 플랫폼·채널을 구축 혹은 개설(상용 플랫폼 활용 및 자체 플랫폼 구축 관계 없음)하여 사업수행 결과물을 발표해야 합니다.</p>
	7	<p>[콘텐츠 창작(진입)]</p> <p>Q. 2022년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진입'유형에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진입'유형에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022년에 지원받은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새로운 온라인 예술창작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한가요?</p> <p>A. 네, 과거연도 보조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진입'유형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p>기제작된 콘텐츠를 단순 재구성·재편집 등이 아닌 발전적인 예술 기획을 통해 콘텐츠를 새롭게 창작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p>
	8	<p>[콘텐츠 창작(진입)]</p> <p>Q. 정액지원규모에 맞는 사업수행이 어렵습니다. 지원결정액 중 일부만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p> <p>A. 본 사업은 사업의 취지 및 유형별 지원규모에 맞추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 선정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편성에 주의하여 지원규모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신청시 작성해주신 자부담율은 선정 이후에도 준수해야 하며 임의적인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합니다.</p>
확산 서비스	9	<p>[확산 서비스(매개, 수익)]</p> <p>Q.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술분야와 관계없는 단체(스타트업 등)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①예술을 주된 주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채널을 ②공고일 이전에 구축 및 개설하여, ③해당 플랫폼·채널을 기반으로 활발한 예술 확산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서 양식 내 해당 실적 작성</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10	<p>[확산 서비스(수익)]</p> <p>Q. 예술단체·기업만 신청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개인 자격이나, 지원신청 이후에 예술단체·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불가능합니다. 공모 신청접수 마감일(2.22.수 18:00)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인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 지원 불가 사업인 확산 서비스(수익) 외에 확산 서비스(매개)와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의 경우, 개인이 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한하여 <u>보조금 교부 이전 변경이 가능합니다.</u></p>
사업 내용	11	<p>[적합한 사업 유형 선택]</p> <p>Q. 본 사업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SNS 등 상용 플랫폼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과 확산 서비스(매개)' 중 어느 유형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가요?</p> <p>A.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온라인 예술창작 실험 및 발표 등 창작에 주안점을 둔 활동이라면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②기제작된 예술콘텐츠의 큐레이션 등 확산 활성화를 위한 비평·담론 형성·리뷰·대중화 등의 대국민 향유 확대 프로젝트라면 '확산 서비스(매개)'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2	<p>[최종 결과물 형식]</p> <p>Q. 사업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콘텐츠 제작 건수, 제작 분량 등이 정해져 있나요?</p> <p>A.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 1건 혹은 여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규모, 내용에 맞추어 적합한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건수, 분량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13	<p>[최종 결과물 형식]</p> <p>Q. 본 사업의 제작물(콘텐츠 또는 확산 서비스)을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가요?</p> <p>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온라인 예술향유 확대를 위해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제작된 결과물을 최초 공개 개방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추가	<p>[최종 결과물 공개]</p> <p>Q. 부속 콘텐츠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기간 내에 모든 콘텐츠를 공개해야 하나요?</p> <p>A. 네, 사업종료일인(23.10.31.)까지 사업 누리집 내 모든 콘텐츠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 누리집 내 공개대상 콘텐츠는 지원신청서 '사업수행 결과물 총괄표'에 작성해주신 모든 주/부속 콘텐츠에 해당됩니다. 모든 콘텐츠는 국민들의 온라인 예술향유 확대를 위해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에 사업기간 종료일인 '23.10.31까지 등록 및 최소 1년 이상('24.12.31.~) 공개 및 개방해야 합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추가	<p>[부속 콘텐츠 관련]</p> <p>Q. 부속 콘텐츠와 관련하여 관련 출판제작, 오프라인 공연/전시를 진행해도 되나요?</p> <p>A. 네, 가능합니다. 단, 본 사업은 온라인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미디어를 예술창작 및 확산도구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 이기에,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부속 콘텐츠가 주가 되는 활동, 온오프라인과의 연계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활동 등)에 대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콘텐츠 창작	14	<p>[콘텐츠 창작(진입, 성장)]</p> <p>Q.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유형에서도 상용 플랫폼 혹은 홈페이지 등 자체 플랫폼 활용하여 창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p> <p>A.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유형의 경우, 자체 혹은 상용 플랫폼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창작 혹은 발표 매체로 예술인 자체 보유 온라인 플랫폼·채널(유튜브, 자체 구축 홈페이지, 앱 등)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물 발표 형식 : 1차) 선정자·단체의 온라인 채널(SNS, 홈페이지 등) 내 결과물 공개 업로드 → 2차)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내 작품 소개 및 온라인 채널 게시 링크 등록 등</p>
확산 서비스	15	<p>[확산 서비스(매개)]</p> <p>Q. 현재 상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적으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여 확산 서비스를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산 서비스를 수행하는 플랫폼을 향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신규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변경 및 예산 편성 모두 불가합니다.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확산 서비스 활동을 증빙한 온라인 플랫폼·채널을 기반으로 한 확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플랫폼의 신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기에 신규 플랫폼 구축 비용 관련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p>
	16	<p>[확산 서비스(매개)]</p> <p>Q. 확산 서비스(매개) 유형에서도 매개 및 향유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신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가요?</p> <p>A. 기창작된 온라인 예술콘텐츠를 새로운 기획을 통해 시장맞춤형으로 제작 확산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향유 증대를 위한 매개형 콘텐츠의 경우 가능하며, 예술창작 및 발표 목적의 콘텐츠 제작은 콘텐츠 창작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국민의 온라인 예술 향유 진작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술가치 확산 목적의 시장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이주의 온라인 예술 소개, 주제별 온라인 예술콘텐츠에 대한 비평,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창작가-향유자 참여형 대담 등</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17	<p>[확산 서비스(수익)]</p> <p>Q. '확산 서비스(수익)'는 무엇인가요? 꼭 사업기간 내 수익을 내야 하나요?</p> <p>A. 사업기간 내 수익을 내지 않아도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본 유형은 단순 홈페이지 기능을 넘어, 지속적인 온라인 예술 생태계 구축 및 온라인 예술활동 환경의 발전을 위해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예술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들의 콘텐츠 확산 및 유통 측면에서 예술인들에게 정당한 콘텐츠 수수료 지급 등의 대가 체계를 갖추고 함께 온라인 예술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많은 플랫폼 사업자(운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p>
사업예산	18	<p>[자부담]</p> <p>Q. 공고문에 나와있는 자부담 작성예시 금액 이상으로 자부담을 편성해도 되나요? 또한 지원신청 시 작성한 자부담은 선정 이후, 모두 그리고 한꺼번에 집행해야 하나요?</p> <p>A. 네, 예시로 작성된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기 위한 최소금액으로, 작성예시 금액 이상의 자부담 편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따라 편성한 자부담은 모두 소진해야 하며, 보조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자부담 분할 집행이 가능합니다.</p>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지원신청 시 작성해주신 자부담율은 선정 이후에도 준수해야 하오니(변경 불가)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p>
	19	<p>[자부담]</p> <p>Q. 자부담 시, 현물 자부담도 가능한가요?</p> <p>A.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p>
	20	<p>[인건비]</p> <p>Q. 인건비 편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p> <p>A. 반드시 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만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내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20%',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 30%'로 인건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은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모두 해당) 참여율을 부풀려 과다하게 인건비를 편성 및 지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오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p>* 고용형태별 예산 구분</p> <table border="1" data-bbox="504 247 2089 443"> <thead> <tr> <th data-bbox="504 247 761 300">보조비목</th> <th data-bbox="761 247 1019 300">보조세목</th> <th data-bbox="1019 247 2089 30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04 300 761 443" rowspan="3">인건비</td> <td data-bbox="761 300 1019 347">보수</td> <td data-bbox="1019 300 2089 347">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td> </tr> <tr> <td data-bbox="761 347 1019 395">상용임금</td> <td data-bbox="1019 347 2089 395">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td> </tr> <tr> <td data-bbox="761 395 1019 443">일용임금</td> <td data-bbox="1019 395 2089 443">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td> </tr> </tbody> </table>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										
	추가	<p>[인건비]</p> <p>Q. 인건비 편성 시, 비중 및 참여율 계산이 궁금합니다.</p> <p>A. 반드시 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만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내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20%',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 30%'로 인건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은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모두 해당) 참여율을 부풀려 과다하게 인건비를 편성 및 지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오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예) A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주40시간 근무대가로 기본 급여 2백만원을 받는 '김0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관련 업무에 월 20% 참여(주40시간 근무 중 8시간)하며, 5개월 동안의 대가에 대해 예산 편성하고자 함(사업기간 외 비용 편성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 참여인력 표 내 : 인건비(참여율)에서 참여율을 20%로 작성 * 예산계획/예산집행계획 표 내 : '인건비'로 월 기본급여 2백만원*참여율20%*사업 관련 투입개월 수 5개월 = 2백만원 										
	추가	<p>[인건비/사례비 구분]</p> <p>Q.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여 인력의 대가를 편성하는 경우, '인건비'로 편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총 인건비 예산 편성 비율 콘텐츠 창작 20% 및 확산 서비스 30%를 맞춰야 하나요?</p> <p>A.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 모두 운영비-일반수용비-사례비/제작비 등으로 편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건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편성 대상이기에 인건비 편성비율을 지켜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인건비 및 사례비에 대한 구분은 '사업설명회 p10'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p>										
21		<p>[예산편성 가능/불가 항목]</p> <p>Q.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성 물품이 무엇인가요?</p> <p>A. 사업 이후로도 신청주체의 자산이 되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 외장하드, 카메라, 책상, 의자 등</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입니다.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임차를 통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p>[예산편성 가능/불가 항목]</p> <p>Q. 사례비 지급에 수반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시 '사업자부담분'도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가능합니다. '운영비-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p>
	23 (추가/ 보완)	<p>[예산편성 가능/불가 항목]</p> <p>Q.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도 국고보조금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불가합니다. 공급가액은 국고보조금 혹은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지원신청서 예산액을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산출방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참고] 지원신청서 예산계획 작성시 자부담 및 공급가액 계산식 참고자료'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단체(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 <p>*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추가	<p>Q.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도 국고보조금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홈텍스에서 '23년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로 표기 된 경우 : 면세(부가가치세 :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액에 포함 가능)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기된 경우 : 과세(부가가치세 :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액에 포함 불가)</p>
	24	<p>[예산편성 가능/불가 항목]</p> <p>Q. 사업수행주체의 상주 및 정기적인 연습 등을 위해 사무실, 상주연습실 등 공간을 임차하는 부분도 편성이 가능한가요?</p> <p>A. 불가합니다.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운영비 성격의 집행항목은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직접 경비로 단기간·일회성·다회성으로 공연장, 연습실을 명확한 명목으로 단기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전세/월세 등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공간을 임차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p>
지원신청서 작성 (별도양식, 필수서류)	25	<p>Q. 지원신청서 양식에 p1-2 안내문은 삭제해도 되나요?</p> <p>A. 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6	<p>Q. 지원신청서 상 파란색 글씨와 각 신청유형에 해당사항 없는 내용은 삭제해도 되나요?</p> <p>A. 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27	<p>Q. p1 '사업개요'에서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개인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p>
	28	<p>Q. '참여인력'의 '전담인력'과 '비전담인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프로젝트 추진 시, 역할의 중요도 및 기여도, 참여율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담인력(주 참여인력) : 기획, 행정, 제작, 개발, 연구, 홍보 등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전담인력(수행역할의 중요도 혹은 기여도 약 20% 미만인 비정기적 참여인력) : 보조스태프, 자문인력 등 확정인 경우 참여자명을 미정인 경우에는 역할별 인원을 작성하여 주십시오.</p>
	29	<p>Q. 주 콘텐츠와 부속 콘텐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속 콘텐츠를 반드시 제작해야 하나요? A. 주/부속 콘텐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계획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만 부속 콘텐츠를 제작하면 됩니다. - 주 콘텐츠 : 본 사업의 목적 등에 부합하게 온라인미디어를 예술 창작 도구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 부속 콘텐츠 :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메이킹 필름, 참여자 인터뷰 영상 등 주된 콘텐츠를 보완하는 부가 콘텐츠 등</p>
	30	<p>Q.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창작 및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은 신청 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신청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저작권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한 내 동의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 시에는 교부 이전까지 반드시 동의를 받으시고, 진행내용을 사업신청서상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주요 주제 및 소재가 되는 저작물의 변경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31	<p>Q. 활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비즈니스센터(https://www.findcopyright.or.kr)에서 해당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상담 창구(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introduction/main-business/index.do)를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체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등의 관련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p>
	32	<p>Q.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와 증빙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시 어떠한 활동을 작성하면 될까요? A.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실적은 신청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기존 온라인 예술활동 실적을 3건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오프라인 활동 등 사업과 연관 없는 활동 제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작성 및 1~2건 작성 가능 * (작성 예시) '20년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이 외 최근 3년간 중 온라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타 기관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또는 선정단체·개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온라인 예술활동 등</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33	<p>Q. 지원신청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시 어떤 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p> <p>A. 선택사항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전 활동 실적 등을 자유 형식(URL 링크 포함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파일인 경우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p>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NCAS)	34	<p>Q.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상, 개인과 단체 아이디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신청해야할까요?</p> <p>A. 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프로젝트 주체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주체(개인/단체)는 향후 e나라도움 집행/정산 주체와 동일하오니 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자세한 구분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p> <table border="1" data-bbox="506 596 2078 1011"> <thead> <tr> <th colspan="2">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th> <th>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소지여부</th> <th>프로젝트 주체</th> <th>신청요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개인</td> <td>예술인, 기획자</td> <td>X</td> <td>단체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td> <td>지원신청하는 본인의 개인ID로 신청</td> </tr> <tr> <td>프로젝트팀</td> <td>X</td> <td>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td> <td>프로젝트팀 참여 인원 중 가장 주된 역할(대표)을 담당하는 이의 개인ID로 신청</td> </tr> <tr> <td rowspan="2">단체</td> <td>프로젝트팀</td> <td>O</td> <td>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td> <td>지원신청하는 해당 프로젝트팀(단체)의 단체ID로 신청</td> </tr> <tr> <td>예술단체·기업</td> <td>O</td> <td>단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td> <td>지원신청하는 해당 단체의 단체ID로 신청</td> </tr> </tbody> </table>	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소지여부	프로젝트 주체	신청요령	개인	예술인, 기획자	X	단체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본인의 개인ID로 신청	프로젝트팀	X	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	프로젝트팀 참여 인원 중 가장 주된 역할(대표)을 담당하는 이의 개인ID로 신청	단체	프로젝트팀	O	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해당 프로젝트팀(단체)의 단체ID로 신청	예술단체·기업	O	단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해당 단체의 단체ID로 신청
	신청주체 구분 * NCAS 신청대상(ID) 기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소지여부	프로젝트 주체	신청요령																				
	개인	예술인, 기획자	X	단체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본인의 개인ID로 신청																				
프로젝트팀		X	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	프로젝트팀 참여 인원 중 가장 주된 역할(대표)을 담당하는 이의 개인ID로 신청																					
단체	프로젝트팀	O	프로젝트팀의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해당 프로젝트팀(단체)의 단체ID로 신청																					
	예술단체·기업	O	단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신청하는 해당 단체의 단체ID로 신청																					
35	<p>Q.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유형명이 일부만 보입니다. 어느 유형인지 확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시스템 사용환경에 따라 일부 사업명이 잘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명' 탭을 오른쪽으로 확장하여(표 테두리에 나타나는 '↔'를 늘림) 사업명 전체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36	<p>Q.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신청 전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p> <p>A. 대표자를 반드시 변경 및 현행화하신 후,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단체명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p> <p>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시고, ②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변경승인 완료된 이후에 지원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37	<p>Q. 신청개요에 실 사업기간이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작성해야 하나요?</p> <p>A. 실 사업기간은 교부확정으로부터 콘텐츠·서비스 제작 및 발표완료 시점으로 '2023.4.3주 ~ 2023.10.31.' 이내에 계획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10.31.이후의 사업 수행(사업비 집행 포함)은 불가합니다.</p>				
	38	<p>Q. 온라인상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사업장소를 무엇으로 작성해야 할까요?</p> <p>A. 온라인 채널 주소 입력, 별도의 주 촬영 및 제작장소 등이 있으면 해당 장소를 입력하여 주십시오.</p>				
	39	<p>Q. 총 소요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작성해야 하나요?</p> <p>A. 총 사업비를 작성하는 란으로, '지원 결정액 + 선정자부담액(자부담액)'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40	<p>Q. 신청사업 세부분야와 신청사업 유형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p> <p>A. 신청자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세부분야'와 '신청사업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시 '기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별도 양식의 '지원신청서'에 해당 사업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신청사업의 심의 분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분야</td> <td style="padding: 5px;">시각예술</td> <td style="width: 30%; padding: 5px;">세부분야</td> <td style="padding: 5px;">영상(미디어아트포함)</td> </tr> </table> <hr/> <p>신청사업 유형</p> <p style="padding-left: 20px;">전시</p> </div>	분야	시각예술	세부분야	영상(미디어아트포함)
분야	시각예술	세부분야	영상(미디어아트포함)			

○ 문의처

- 콘텐츠 창작(진입) 061-900-2231, 2283 / artchangeup@arko.or.kr
- 콘텐츠 창작(성장) 061-900-2289, 2237 / artchangeup@arko.or.kr
-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 061-900-2237, 2283 / artchangeup@arko.or.kr

* 지원신청 시,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8:00) 이용바랍니다.